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·단순화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하위법령 제·개정('13. 12. 12. 시행)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(안 제4조의2)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직종개편)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게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

개정됨에 따라 가산 징수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
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·간소화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하위
법령 제·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
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